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2. 22 선고 2021가단637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]

전 문

원 고 재단법인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12. 8.

판 결 선 고 2021. 12. 2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양천구 D 대 1106.7㎡ 중 E의 지분(2479.9분의 75.22)에 관하여
서울남부지방법원 1989. 5. 10. 접수 제452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
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E은 1988. 9. 30. 서울 양천구 D 대 1106.7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 중 2479.9분의 75.22 지분에 관하여 1988. 9. 29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1989. 5. 10.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9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고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나. 이 사건 토지는 1996. 12. 19. 그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. 다. 한편, 원고는 1998. 5. 22. 서울 양천구 D 제4층 F호(이하 '이 사건 구분건물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1998. 4. 1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【인정 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원고는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공동담보로 E 소유의 서울 양천구 G건물 H호(이하 'G건물'이라고만 한다)도 제공되었는데 G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후 G건물은 멸실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에도 등기부상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상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소유권을 방해받고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이 원래부터 부존재하였거나 무효 또는 취소해제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실효되었거나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 후발적 실효사유가 생겼다는 등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원인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,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방해받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[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구분건물의 등기부상 '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'란에 '2007. 6. 21. (이 사건 토지에 관한) 별도등기 말소'라고 기재되어 있다]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정곤